▣ 定款 및 諸 規定 ▣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2004. 11. 13 제정
2009. 11. 6 개정
2012. 2. 18 개정
2012. 10. 20 개정
2020. 11. 9 개정
2020. 12. 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14조 1항에 의해, 회장과 수석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칭한다)을 선출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1. 회장은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학회의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및 당연직 선거인단수의 결정 등 회장단 선거과정 일체를 운영, 관리, 감독, 홍보한다.

제4조(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 선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 해산된다.

제3장 선거인단

제5조(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선거인단'이라 함은 선거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제6조(구성)

1. 선거인단은 당연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된다.
2. 당연직 선거인단은 정관 제20조 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성원, 우대회원, 원로회원으로 한다.
3. 일반직 선거인단은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명시된 회장단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학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단,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가입한지 3년 이하도 포함한다.
4.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정의된 당연직 선거인단의 구성원은 일반직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제4장 선거일 공고,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제7조(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등록) 회장단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라 칭한다)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회장, 수석부회장에 중복하여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후보등록자격) 후보는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10년 이상 경과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제10조(정견발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5장 회장단 선출

제11조(투표 및 합산 방법)

1. 회장단은 선거인단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2. 당연직은 선거당일 현장투표를 실시하며, 일반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다.
3. 일반직의 투표결과는 후보 중 최상위 우선순위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하며,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다.(별표 1 참조)
4. 당연직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1인1표로 반영하고, 일반직 선거인단의 전체투표결과는 당연직 선거인단수와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다.(별표 1 참조) 단, 일반직 선거인단의 투표인수가 당연직 투표인수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일반직 투표결과를 1인1표로 반영한다.

제12조(선출방법) 회장단의 선출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에 따라서 과반수(이하 "과반수")를 득표한자를 선출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연직은 상위득표순위 2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각 선거인이 1인을 표시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 임기시작 직전 총회에서 선거에 참여한 당연직선거인단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다.
4.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롭게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며, 공석이 된 수석부회장은 차년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무효처리) 기재된 성명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오기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별표 1 : 회장단 투표결과 합산 방식

(투표순위 변경 방법): 일반직의 투표 순위는 다음 예시에 따라서 변경한다.

1) 일반직 투표자 A씨가 철수(1등), 영희(2등), 길동(3등) 순으로 투표하였을 경우 1차 투표에서 A씨는 철수로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후보	순위		
	1	2	3
철수	√		
영희		√	
길동			√

2) 만약, 철수와 영희가 과반수를 못 넘고 상위득표순위 2인일 경우 2차 투표에서도 A씨는 철수로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만약, 영희와 길동이 과반수를 못 넘고 상위득표순위 2인일 경우 2차 투표에서 A씨는 영희로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투표결과 합산 방법): 당연직과 일반직의 투표결과는 다음 예시에 따라서 합산한다.

1) 투표결과 합산 = 당연직 실제득표수 + 일반직 환산득표수

2) 일반직 환산득표수 = 일반직 실제득표수 x (당연직 선거인단수 / 일반직 실제득표수 합) 여기서, "당연직 선거인단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당연직 선거인단수를 의미한다.

3) 환산득표수는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당연직 선거인단수 170 적용시, 당연직 170인 전원 투표 참여시 합산 예시

실제 득표수(예시1)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90	60	20	170
일반직	230	180	90	500
합계	**320**	**240**	**110**	**670**

⇒

환산 득표수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90	60	20	170
일반직	78	61	31	170
합계	**168**	**121**	**51**	**340**

※ 당연직 선거인단수 170 적용시, 당연직 160인 투표 참여시 합산 예시

실제 득표수(예시2)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80	60	20	160
일반직	230	180	90	500
합계	**310**	**240**	**110**	**660**

⇒

환산 득표수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80	60	20	160
일반직	78	61	31	170
합계	**158**	**121**	**51**	**330**

※ 당연직 선거인단수 170 적용시, 당연직 80인 투표 참여시 합산 예시

실제 득표수(예시2)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40	30	10	80
일반직	230	180	90	500
합계	**270**	**210**	**100**	**580**

⇒

환산 득표수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40	30	10	80
일반직	78	61	31	170
합계	**118**	**91**	**41**	**250**